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의결년월일	99. 10. 12 (제73회)

제출년월일 : 1999. 10. 5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부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조)
-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천시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